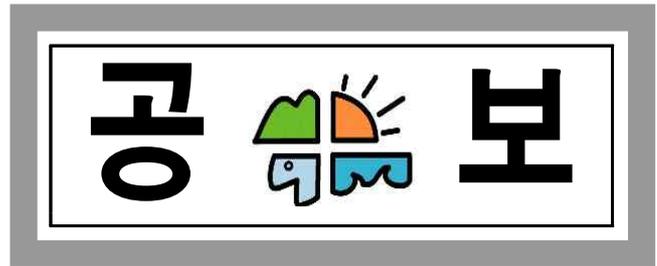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72호 2022년 2월 25일(금)

조 례

-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3
-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 8
-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18
-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
-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규 칙

-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5
-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8

훈 령

-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정 31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3
-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정정) …………… 34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 지번변경 공시송달 공고 …………… 35

입법예고

-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7
- 속초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40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43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16호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 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체계 구축) 시장은 다함께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 확대 사업
2. 다함께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다함께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4. 다함께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5.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6.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2. 돌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3.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활동
4. 돌봄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5. 적절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돌봄아동과 학부모 상담, 다함께돌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제6조(다함께돌봄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① 시장은 지역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돌봄 시설 간의 연계·조정 및 상호 협력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 돌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정책과장, 가족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지역 돌봄 시설 관계자
4. 돌봄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
5.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 담당 교사
6.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17호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 으로써 시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6.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

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3인(속초시의원)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위원 중 다선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기타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시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시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급

성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급

성명

(감 사 문)

20 년 월 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

성명 :

(상 장 문 안)

20 년 월 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 ○ ○ ○ (인)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근무기간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인)	
<p>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 천 관 (인)</p>						

주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포 상 대 장

번호	포 상 년월일	포상 종류	포상 기관	피 포 상 자				공적개요	부상	비고
				직위 직명	소속 주소	성별	성명			
			속초시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사장 등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18호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신고 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속초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인력 확보)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19호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의 개정) 속초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규정”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속초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속초시 보육 조례」의 개정) 속초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속초시에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의 개정)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속초시 건축 조례」의 개정)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의 개정)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20호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고, 관련 단체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을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로 한다.

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21호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칙 제49조제2항”을 “훈령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②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③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④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⑤ 속초시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⑥ 속초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 별표 1 >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관 직 명	본 칭	지방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행정국장	-	-
징 수 관	행정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부서장
재 무 관	행정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부서장, 각 부서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행정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기획예산과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예산과장	-	-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	-
지 출 원	경리담당	의사담당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징수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 주무담당	-	각 부서 주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2월 2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22호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①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자가 표준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1부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별도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원자격 확인)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제도 등 또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조례 제3조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속초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2022년 1월 1일인 사람부터 소급 적용한다.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2월 25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훈령 제766호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정

제1조(「속초시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의 개정) 속초시청 구내식당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속초시 마을회관 건립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의 개정) 속초시 마을회관 건립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이륜차운영관리규정」의 개정) 속초시이륜차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한국속초상공회의소 훈춘대표처 운영 규정」의 개정) 한국속초상공회의소 훈춘대표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속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속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규정」의 개정) 속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을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고시 제2022-22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2월 23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교통 시설

■ 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 정	1	궤 도 (케이블카)	조양동 1464-12번지	대포동 940-1번지	속초해수욕장 ~ 대포항	1,997	25,610	'20.12.30.	유원지 중복결정 (약 18,969㎡)
변 경	1	궤 도 (케이블카)	조양동 1464-12번지	대포동 940-1번지	속초해수욕장 ~ 대포항	1,997	25,781 (증 171)	'20.12.30.	유원지 중복결정 (약 19,255㎡)

■ 궤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시 설 명 (변경없음)	변경내용	변경사유
궤도(케이블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궤도 선형, 면적 및 지주 수량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25,610㎡ → 25,781㎡(증 171) 지주: 11개 → 10개(감 1개) 연장(1,997m) 및 폭원(10m) 변경없음 정류장(2개소) 및 중간기착지(1개소) 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이블카 노선이 속초해수욕장 관리사무소 건축물 상부를 통과함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부 선형 변경과, 세부설계에 따른 지주 위치 변경 및 수량 축소 등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정정)

1. 속초시 고시 제2022-21호로 속초 도시관리계획(도로: 소로3-2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기재사항 표기 오류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을 정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정정)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033-639-151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2월 25일
속 초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정정)

가.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정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	7	국지도로	269	대로1-1 대포479-8철	대포70-4도	일반도로	2021.9.10 (속고 제2021-108호)	
변경 (당초)	소로	3	2	7	국지도로	267	대로1-1 대포479-8철	대포70-4도	일반도로	2021.9.10 (속고 제2021-108호)	
변경 (정정)	소로	3	2	7	국지도로	269	대로1-1 대포479-8철	대포70-4도	일반도로	2021.9.10 (속고 제2021-108호)	

나.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정정)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당초)	소로3-2	소로3-2	○ 선형변경 - 연장 : 267m - 폭원 : 7m	○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및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선형조정
변경 (정정)	소로3-2	소로3-2	○ 선형변경 - 연장 : 269m - 폭원 : 7m	

※ 정정사유: 연장 표기 오류

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건축물대장 직권 지번변경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토지가 합병되어 건축물 대장 상의 지번을 직권 변경하고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해당 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2. 24.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2. 2. 24. ~ 2022. 3. 10.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기존 지번	변경 지번
건축물대장 직권 지번변경 (변경일:2021.11.16.)	정○옥, 박○임	-	토지합병에 따른 변경	노학동 319-3 외 1필지(319-5)	노학동 319-3

4.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일부 직렬·직급의 정원 조정을 통해 소수직렬 정원규모를 확대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본청, 사업소) 및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별표)

- 6급 정원 조정 : 164명 → 166명 (2명 증)
- 7급 정원 조정 : 218명 → 219명 (1명 증)
- 8급 정원 조정 : 203명 → 202명 (1명 감)
- 9급 정원 조정 : 60명 → 58명 (2명 감)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조직인사팀)
- 연락처 : 전화 033-639-2140, 팩스 033-639-2590, 전자문서 gm052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33-639-2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붙임 파일 참조

속초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일부 직렬·직급의 정원 조정을 통해 소수직렬 정원규모를 확대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청 및 사업소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1 및 안 별표4)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법인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조직인사팀)
- 연락처 : 전화 033-639-2140, 팩스 033-639-2590, 전자문서 gm052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33-639-2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훈령 제 호

속초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과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별표4) 붙임 파일 참조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과 단위 이하 조직의 기본단위인 계층적 '담당제'를 수평적이고 성과중심의 '팀제'로 변경하여 상호 소통 및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관별 팀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1)
- 나. 팀장 명칭변경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조직인사팀)
- 연락처 : 전화 033-639-2140, 팩스 033-639-2590, 전자문서 gm0524@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33-639-21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팀”을 “TF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팀제운영)”을 “(TF팀제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팀제”를 “TF팀제”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담당」제를 「팀」제”를 “ ‘팀’제를 ‘TF팀’제”로 한다.

③ TF팀의 구성원(이하 “TF팀원”이라 한다)은 팀의 책임자(이하 “TF팀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TF팀장은 소속 직상급자의 명을 받아 TF팀에 부여된 업무를 총괄하고 TF팀원의 업무 조정과 결재권을 가진다.

제4조의 제목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담당별”을 “팀별”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담당간”을 각각 “팀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담당별”을 “팀별”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 내용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속초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담당”을 “도시계획팀장”으로, “도로시설담당”을 “도로시설팀장”으로, “도로관리담당”을 “도로관리팀장”으로, “지역개발담당”을

“지역개발팀장”으로, “안전예방담당”을 “안전예방팀장”으로, “급수담당”을 “급수팀장”으로, “누수방지담당”을 “누수방지팀장”으로, “하수시설담당”을 “하수시설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굴착업무담당”을 “도로굴착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속초시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 중 “자치지원담당”을 “시정팀장”으로 한다.

③ 속초시립풍물단원 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관리담당”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④ 속초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원행정담당”을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민원행정담당”을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

⑤ 속초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사담당”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⑥ 속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통시설담당”을 “교통시설팀장”으로 한다.

⑦ 속초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정보담당”을 “지적정보팀장”으로 한다.

⑧ 속초시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서무후생담당”을 “서무후생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무후생담당”을 “서무후생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사담당”을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서무후생담당)”을 “(서무후생팀장)”으로 한다.

⑨ 속초시 투자사업 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⑩ 속초시정자료실 운영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리담당”을 “경리팀장”으로, “문서주관담당”을 “문서주관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문서통신담당”을 “문서통신팀장”으로 한다.

⑪속초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설치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건설행정담당”을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5호나목 중 “(건설행정담당)”을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건설행정담당)”을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건설행정담당)”을 “(건설행정팀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중 “(건설행정담당)”을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⑫ 속초시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지역개발담당”을 “지역개발팀장”으로 한다.

⑬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서통신담당주사”를 “문서통신팀장”으로 한다.

⑭ 속초시청직원자녀장학금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무후생담당”을 “서무후생팀장”으로 한다.

⑮ 속초시인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인사담당주사”를 “조직인사팀장”으로 한다.

⑯ 속초시행정혁신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자치지원담당”을 “주민자치팀장”으로 한다.

⑰ 속초시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민방위담당”을 “민방위팀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민방위담당”을 “민방위팀장”으로 한다.
⑱ 속초시의회 포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의사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⑲ 속초시 의회사무과 직무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사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⑳ 속초시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팀장”으로 한다.
㉑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조직인사 업무담당”을 “조직인사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부서의 업무담당”을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관리부서 업무담당”을 “관리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㉒ 속초시 행사유치성과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사유치 업무담당”을 “행사유치 업무팀장”으로 한다.
㉓ 속초시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대책 협의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당업무 주무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㉔ 속초시 설악동 재개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설악동 재개발업무 담당”을 “설악동 재개발업무 팀장”으로 한다.
㉕ 속초시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무국외여행 업무담당”을 “공무국외여행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⑥ 속초시 재난 예·경보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하고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5호 중 “재난업무 담당”을 “재난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⑦ 속초시이륜차운영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주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주무”를 “행정팀장”으로 한다.

②⑧ 속초시동행정실적심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담당</u>”이란 담당관·과·소·동의 사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담당관·과·소·동에 단위조직의 책임자로서 소관분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신의 고유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4. “<u>팀</u>”이라함은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의 양과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담당관·과·소별로 설치하는 한시적 성격의 업무추진 조직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팀장</u>” ----- ----- ----- ----- -----.</p> <p>4. “<u>TF팀</u>” ----- ----- ----- ----- -----.</p>
<p>제3조(<u>팀제운영</u>) ① 각 부서에 분장된 사무 외에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u>팀제</u>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u>TF팀제운영</u>) ① ----- ----- ----- <u>TF</u> <u>팀제</u> ----- -----.</p> <p>② (현행과 같음)</p>

③ 팀의 구성원(이하 “팀원”
이라 한다)은 팀의 책임자(이하
“팀장” 이라 한다)의 명을 받
아 임무를 수행하며, 팀장은 소
속 직상급자의 명을 받아 팀에
부여된 업무를 총괄하고 팀원의
업무 조정과 결재권을 가진다.

④ 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효율적인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당해기관장의 결정으로 「답
당」 제를 「팀」 제로 바꾸어 운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관
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
다.

제4조(담당) ① 담당은 담당관·
과·소·동의 장(이하 “과장
등” 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속초시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직급체
계에 적합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다.

② 담당의 명칭과 직급은 별표
1과 같고, 담당별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TF팀의 구성원(이하 “TF팀
원” 이라 한다)은 팀의 책임자
(이하 “TF팀장” 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TF
팀장은 소속 직상급자의 명을
받아 TF팀에 부여된 업무를 총
괄하고 TF팀원의 업무 조정과
결재권을 가진다.

④ -----

----- ‘팀’ 제를 ‘TF팀’ 제-----
-----.

-----.

제4조(팀장) ① 팀장은 -----

-----.

② 팀장의 -----
----- 팀별 -----
-----.

제5조(과장등의 기능조정권) ①
과장등은 별표 2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업무량의 형평성과 능률
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담당
당간 분장사무의 조정과 신규사
무에 대한 업무 분장권을 가진
다.

② (생략)

③ 과장등은 담당간 분장사무와
인력을 조정하였을 경우에는 조
직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
다.(단, 의회·직속기관·사업
소는 기관별로 작성 통보)

제6조(분장사무의 조정) ① 별표
2의 담당별 분장사무에 명시되
지 않은 사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
항에 따라 소관부서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과장등의 기능조정권) ① -

----- 팀간 -----

-----.

② (현행과 같음)

③ ----- 팀간 -----

제6조(분장사무의 조정) ① -----
-- 팀별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기관별 팀장의 명칭 및 직급

기관별	담당관·과·소·동	팀 장 명 칭	직 렬 및 직 급
본 청	공보감사담당관	공보팀장 감사팀장 조사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자치행정과	서무후생팀장 조직인사팀장 시정팀장 주민자치팀장 문서통신팀장 정보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예산팀장 법무팀장 교류규제평가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관 광 과	관광기획팀장 관광개발팀장 설악동개발팀장 관광홍보팀장 관광축제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문화유산팀장 문화예술회관팀장 체육진흥마케팅팀장 체육시설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학예연구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세 무 과	세무행정팀장 부과평가팀장 세무조사팀장 징수팀장 지방소득세팀장 세외수입징수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회 계 과	경리팀장 계약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기관별	담당관·과·소·동	팀 장 명 칭	직렬 및 직급
	민원토지과	민원행정팀장 가족여권팀장 지적정보팀장 토지관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장 기업지원팀장 일자리공동체팀장 청년정책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상권활성화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역발전전략과	지역발전전략팀장 물류통상팀장 철도정책팀장 도시재생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희망복지팀장 통합조사팀장 생활보장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가족지원과	여성정책팀장 경로지원팀장 경로시설팀장 안심보육팀장 인구정책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주사
	교육청소년과	교육협력팀장 평생교육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아동보호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생활환경팀장 자원순환팀장 환경지도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기관별	담당관·과·소·동	팀 장 명 칭	직 령 및 직 급
			또는 지방보건주사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장 도시계획팀장 도로시설팀장 도로관리팀장 지역개발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방재복구팀장 안전예방팀장 민방위팀장 통합관제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건축허가팀장 주택팀장 경관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교통지도팀장 교통시설팀장 차량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산림조성팀장 산림보호팀장 공원관리팀장 공원계획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장 어업진흥팀장 연안관리팀장 항만관리팀장 해양개발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기관별	담당관·과·소·동	팀 장 명 칭	직 렬 및 직 급	
의 회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의사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	
직속기관	농 업 기술센터	농업행정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지도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기술보급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축산방역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기반조성팀장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동물보호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보 건 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방역관리팀장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치매관리팀장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정신건강팀장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보건희망케어팀장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예방접종팀장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감염병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위생의약과	공중위생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식품안전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위생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의약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기관별	담당관·과·소·동	팀 장 명 칭	직 렬 및 직 급
			또는 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사 업 소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급수팀장 누수방지팀장 시험팀장 운영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환경연구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환경연구사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팀장 하수운영팀장 하수시설팀장 하수시험팀장 오수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연구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시립박물관	운영지원팀장 학예팀장 시설관리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방학예연구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환경자원사업소	환경관리팀장 환경시설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도서체육센터	운영지원팀장 시설관리팀장 도서관팀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동	영 량 동	행정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동 명 동	행정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기관별	담당관·과·소·동	팀 장 명 칭	직렬 및 직급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금 호 동	행정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교 동	행정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노 학 동	행정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조 양 동	행정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청 호 동	행정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대 포 동	행정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찾아가는보건복지팀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 (별표4) 붙임 파일 참조